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76 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정태호·이수진·박해철

전현희 • 복기왕 • 김주영

박홍배 · 김남근 · 송재봉

민병덕 · 안호영 · 김민석

김현정 • 박균택 • 김 윤

이용우 · 서영교 · 김성환

김성회 · 서영석 · 어기구

김태선 • 이건태 • 윤후덕

이재관 • 한정애 • 남인순

백승아 • 최기상 • 추미애

송옥주 · 김영환 · 박홍근

이연희 · 임호선 · 허 영

조승래 • 정진욱 • 김원이

이인영 · 정동영 · 박정현

박지원 • 이광희 • 최민희

진성준 의원(46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,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, 고용

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정교섭·협의 제도가 전무한 상황임.

최근 ILO(국제노동기구)는 정부의 지침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,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 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'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결정위원회'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·협의를 법제도화하고 자 함(제10조의2 신설).

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, 운영, 경영평가, 예산,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음.

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·해제,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 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 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 므로,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1인에서 국무총리 추천 10인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 2인으로 함(안 제9조).
- 나.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 되도록 하고,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을 공고하도록 함(안 제10조).
- 다.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, 근로조건,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'공공기관 임금·근로 조건 결정위원회'을 두도록 함(안 제10조의2 신설).
- 라.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·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반영 절차를 의무화함(안 제 14조).
- 마.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,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(안 제14조의2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제4호 중 "언론계·학계 및 노동계"를 "언론계 및 학계"로,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국무총리"로, "11인"을 "10인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제4호의 규정"을 "제1항제4호 및 제5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및 제5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외의 부분 중 "제1항제4호의 규정"을 각각 "제1항제4호 및 제5호"로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본문 중 "제1항제4호의 규정"을 "제1항제4호의 규정"을 "제1항제4호 및 제5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본문 중 "제1항제4호의 규정"을 "제1항제4호 및 제5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본문 중 "제1항제4호의 규정"을 "제5항제1호"로 하다.

- 5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 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사람
-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여성, 소비자단체,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각 사회계층의 대표 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제4호"를 "제4호 및 제5호"로, "과반수가"를 "3분의 2

이상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본문 중 "공개하여야"를 "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"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3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개회한다. 이 경우 개회일 7일 전까지 개회 일시, 개회 장소, 안건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·의결할 수 있다.

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결정위원회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근로자의임금, 근로조건,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결정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, 각각 같은 수로 한다.
 - ③ 위원회는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・

-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에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·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구 또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,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 중 기업 공개,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각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의 기관통폐합·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4조의2(자산처분) ①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, 교환, 또는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, 준정부기관·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승인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

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기관 자산처분의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및 국회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, 교환 또는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운	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			
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				
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				
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				
다.	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	
4.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	4			
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				
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				
법조계·경제계· <u>언론계·학</u>	<u>언론계 및 학계</u>			
<u>계 및 노동계</u> 등 다양한 분야	<u>국무총</u>			
에서 <u>기획재정부장관</u> 의 추천	<u>리</u>			
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<u>11인</u>	<u>10인</u>			
이내의 사람				
<u><신 설></u>	5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			
	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			
	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			
	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			
	이내의 사람			
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	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			
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				
연임할 수 있다.				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을 위촉			

-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·책임 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.
-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.
- 1. ~ 3. (생략)
- ⑤ 위원장은 <u>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. 다만, <u>제4항제1</u>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.

<u>⑥</u> (생 략)

제10조(운영위원회의 회의) ① 운 저 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

할 때에는 여성, 소비자단체,
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
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각
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
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<u>④</u> 제1항제4호 및 제5호
<u>⑤</u> 제1항제4호 및 제5호
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⑥</u> <u>제1항제4호 및 제</u>
<u>5호</u> <u>제5항</u>
<u>제5항제1호</u>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네10조(운영위원회의 회의) ①

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,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. <단서 신설>

③ ~ ⑤ (생 략)

<u>⑥</u>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

<u>제4호 및 제5호</u>
<u>3분의 2 이상이</u>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
나 3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
개회한다. 이 경우 개회일 7일
전까지 개회 일시, 개회 장소,
안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<u>③</u>
<u>다만, 대통령령으로</u>
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
는 서면으로 심의・의결할 수
<u>있다.</u>
$\underline{4}$ \sim $\underline{6}$ (현행 제3항부터 제5
항까지와 같음)
<u>⑦</u>

성하고 <u>공개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비 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.

<신 설>

	이를	지체	없이	공개
<u>하여야</u>	.			

--.

- 제10조의2(공공기관 임금・근로 조건 결정위원회) ① 기획재정 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운영위 원회의 심의・의결사항 중 공 공기관 근로자의 임금, 근로조 건,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 을 사전에 심의・의결하기 위 하여 운영위원회에 '공공기관 임금・근로조건 결정위원회'(이 하 '위원회'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 원으로 구성하되, 각각 같은 수 로한다.
 - ③ 위원회는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·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4조(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 제14조(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 정 등) ① (생 략) 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 여 집행실태를 확인 · 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활한

- ⑤ 위원회에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・연구 또 는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구 또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 중 기업 공 개,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의 매각 또는 공공기관 사업의 기관통폐합・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 영하여야 한다.
- ③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

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1항, <u>제3항</u> 및 <u>제4항</u>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- .
<u>⑥</u> <u>제4항</u> <u>제5항</u>

제14조의2(자산처분) ① 공공기관 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, 교환, 또는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 려는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 부장관의 승인을, 준정부기관・ 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 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그 승인내역을 지체 없 이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

<u>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</u> <u>령으로 정한다.</u>